

【 25 】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년월일 : 2006. 4.

제출자 : 양주시장

1. 개정이유

-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당연직위원 명칭 변경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기능 추가

2. 주요골자

-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 중 사회복지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변경
(안 제4조 제3항)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실무협의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대행하는 조항 추가 (안 제4조 제6항)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검토·심의·의결내용 조항 추가
(안 제4조 제7항)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제3항의 “사회복지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제4조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실무협의체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 위원회를 대행한다.
- ⑦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의결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안건과 관련하여 대표협의체가 위임한 사항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4. 그 밖의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실무협의체) ①~② 생략 ③ ----- <u>사회복지</u> --, -----.</p> <p>④~⑤ 생략</p> <p>(신설)</p>	<p>제4조(실무협의체) ①~②(현행과 같음) ③ ----- <u>복지기획</u>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실무협의체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대행 한다.</p> <p>⑦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 심의 · 의결한다.</p> <p>1. 대표협의체의 안전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p> <p>2. 안전과 관련하여 대표협의체가 위임한 사항</p> <p>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사항</p> <p>4.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 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p>

관계법령발췌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긴급지원의 기간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4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동 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2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제15조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26 】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2006. 4.

제출자 : 양주시장

1. 개정이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민간사업자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현 단가가 2001년도에 책정되어 그 간의 물가인상분 및 강화된 환경관련법에 따른 추가적인 시설개선비용 등으로 인한 인상요인을 감안 처리비용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수거 수수료를 현행 1,300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함(안 제18조제1항 별표 4)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 제3호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수수료의 수수료란 중 “월 1,300원” 을 “월 1,900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4】</p> <p>3.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수수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구 분</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사용용기 용 량</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수 수 료</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비 고</th></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2px;">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 택,다세대주택)</td><td style="padding: 2px;">120 ℥</td><td style="padding: 2px;">가구당 <u>월 1,300원</u></td><td style="padding: 2px;">부과:매월 20일 징수:매월 말일</td></tr> </tbody> </table>	구 분	사용용기 용 량	수 수 료	비 고	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 택,다세대주택)	120 ℥	가구당 <u>월 1,300원</u>	부과:매월 20일 징수:매월 말일	<p>【별표4】</p> <p>3.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수수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구 분</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사용용기 용 량</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수 수 료</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비 고</th></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2px;">.....</td><td style="padding: 2px;">.....</td><td style="padding: 2px;">.....</td><td style="padding: 2px;"><u>월 1,900원</u></td></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구 분	사용용기 용 량	수 수 료	비 고	<u>월 1,900원</u>
구 분	사용용기 용 량	수 수 료	비 고														
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 택,다세대주택)	120 ℥	가구당 <u>월 1,300원</u>	부과:매월 20일 징수:매월 말일														
구 분	사용용기 용 량	수 수 료	비 고														
.....	<u>월 1,900원</u>														